

2019년도 4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

1 예산 전용 보고

□ 관련근거

○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(예산의 전용)

- 시장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에 보고

※ 예산전용 :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예산변경 또는 단위사업내 목그룹 간 변경하여 사용 (목그룹: 인건비 100, 물건비 200, 자본지출-400 등)

□ 예산전용 내역 : 총 2건, 7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			전용액		전용후 예산액	
부서명	정책	단위	세부	통계목	예산현액	증	감		
총 계 (① + ②)						1,676,107	70,000	70,000	1,676,107
소계 (① 개발사업 공공기여 개선방안 용역)						1,477,607	53,500	53,500	1,477,607
도 시 계 획 과	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	도시발전 연구	도시건축혁신 공공기후재단 운영	사무관리비 (201-01)	160,000	-	15,000	145,000	
			도시건축혁신 공공기후재단 운영	시설비 (401-01)	-	15,000	-	15,000	
			2019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	사무관리비 (201-01)	247,000	-	33,500	213,500	
			도시건축혁신 공공기후재단 운영	시설비 (401-01)	15,000	33,500	-	48,500	
			도시계획정보 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구축	전산개발비 (207-02)	1,007,107	-	5,000	1,002,107	
			도시건축혁신 공공기후재단 운영	시설비 (401-01)	48,500	5,000	-	53,500	
소계 (②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위원회 공간조성)						198,500	16,500	16,500	198,500
도 시 계 획 과	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	도시발전 연구	도시건축혁신 공공기후재단 운영	사무관리비 (201-01)	145,000	-	16,500	128,500	
			도시건축혁신 공공기후재단 운영	시설비 (401-01)	53,500	16,500	-	70,000	

□ 전용사유

① 개발사업 공공기여 개선방안 용역

-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공공기여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용역 수립을 위해 예산 전용
 - 각 부서에서 운용 중인 도시계획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 관련, 개발방식 및 계획기준 적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시급히 필요
 - 또한, 정비사업 등의 사전 공공기획 강화 등을 통해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개별 개발사업 수단별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
 - “도시건축혁신공공기획자문단운영” 사무관리비(15,000천원), “2019 도시정책 컨퍼런스 운영” 사무관리비(33,500천원), “도시계획정보시스템 웹기반 업무포털 구축” 전산개발비(5,000천원)로 편성된 예산 총 53,000천원을 “도시건축혁신공공기획자문단운영” 시설비로 전용

②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위원회 공간조성

-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위원회 공간조성을 위해 전용
 - 도시·건축 혁신방안으로 추진되는 ‘사전공공기획’과 더불어 위원회 의사결정 진행과정에서 고도화된 심의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 필요
 - 서울 도시·건축 관련 통합적 위원회 공간, 시민공론화의 장 및 전시·문화 복합공간인 「서울도시건축센터」 내 위원회 특화공간(열린위원회 공간)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
 - 동일 세부사업 “도시건축공공기획자문단운영” 내 사무관리비 일부 16,500천원을 시설비로 전용

2

예비비 사용 보고

□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
 -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보고
- 소송 판결에 따른 공탁금 지급계획(예비비) (2019.11.26.)

□ 예비비 사용 내역 : 총 1건, 50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당 초 예산액	예비비 사용승인액		사용승인 후 예산현액	승인일자
부서명	세부사업명	통계목		증	감		
시 설 계획과	도시계획시설 관련 소송	공공운영비	0	500,000	-	500,000	2019.12.2.

□ 예비비 사용 사유

- “간접강제 집행정지” 판결로 간접강제 집행 정지를 위해 예비비 사용
 - “간접강제 집행정지” 판결에 따라 “간접강제 청구이의의 소” 3심 판결 확정시 까지 간접강제 집행 정지를 위한 담보로 공탁금 5억원을 지출코자 예비비 사용